

위탁 2012-7

지속가능한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방안

연구책임자 : 전 규 안(송실대학교)



위탁 2012-7

지속가능한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방안

연구책임자 : 전규안(송실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진영(건국대학교)

조중근(장안대학교)

배현원(삼경회계법인)

연구협력관 : 김경철(한국장학재단)

박영란(한국장학재단)



제 출 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속가능한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1.

- 주관연구기관명 :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연 구 기 간 : 2012.08.31 ~ 2012.11.30
- 주관연구책임자 : 전 규 안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요 약

I. 서론

1. 연구배경

2009년 이후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등록금 절대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이 큰 상태이다.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수준은 2008년 현재 국·공립대학이 PPP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5,315, 사립대학이 \$9,586으로 국·공립 및 사립대학 모두 11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이다. 또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연간 평균 등록금이 약 1.8배가량 많은데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80%가 사립대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대학생이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11%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06년까지 11%대에 머물던 교육비비중이 2007년 이후 12%대를 넘어선데다 2009년에는 14%에 달하는 등 교육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요인은 첫째, 대학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주요대학이 등록금 상승을 주도하고 나머지 대학들이 따라가는 행태의 가격설

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등록금이 자율화됨에 따라 1989년부터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큰 폭 증가하였다. 셋째, 글로벌 경쟁 가속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교원의 확보, 연구환경 개선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반복되었다. 넷째, 대학 재정의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아 지출요인 발생 시에 등록금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재원조달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사립대학의 경우 적립금 및 이월금 축적을 통한 여유자금 마련 경향이 큰 반면 교육활동 투자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2. 등록금 관련 공약 및 법 개정 경과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국가차원의 장학제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를 공약하였으며 이주호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를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35% 경감하고 대학자체의 노력을 통해 15%를 추가 경감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민주통합당은 부담액 기준으로 등록금 수준을 50%까지 줄여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약하였다. 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재원 지원을 하고,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였다.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어 2010년 1월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직

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7인 이상 구성하여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1년 9월 개정을 통해 학생위원의 비중이 3/1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에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경우 적립 가능한 범위를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하였다. 또 2012년 1월에는 법인 부담금(교직원 연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대학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되었다.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등록금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방안의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등록금 부담 50% 완화 정책에 대해 재원 조달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등록금 부담 35% 완화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달방법, 지원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대학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 15% 완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조치만으로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활성화 등 재원 조달의 다양화와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경쟁력 강화와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자금 지원기관으로서 (재)한국장학재단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

는 한편 회계투명성 강화 및 재정효율화 방안 등 대학자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당국에 제안하고자 한다.

II.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현황

1. 제도적 정비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최초의 기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대학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대학에 대학생별 소득분위 정보 제공, 대학의 자체 노력 계획서 검토 및 평가 등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장학금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1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의무화되었다. 등록금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등록금 인상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으로 7인 이상 구성하여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위원이 전체 위원 총수의 3/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정부의 재정지원

가. 국가장학사업 규모

국가장학사업은 2008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신설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장학금, 2011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이 신설된데 이어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이 신설되는 등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산 규모면에서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지원자도 27.6만 명에서 약 10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국가장학금으로 1조 7,50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가장학사업이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나. 국가장학금 사업

국가장학금 사업의 기본방향은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I 과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2012년 총 지원규모는 1조 7,500억 원이다. 소득분위 최저지원인 I 유형은 전체 42.9%인 7,500억 원이며 대학자체노력연계 추가지원인 II유형이 57.1%인 1조원이다.

1)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기초수급자에게 450만원의 100%를 그리고 소득 1분위는 50%, 2분위는 30%, 3분위는 20%를 대학을 경유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은 최소한 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원기간은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지원받고 재학 중인 대학 및 계열의 정규학기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재단에서 소득분위, 성적 등을 확인한 후 선정하고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을 시행한다.

전문대학은 2년제의 경우 최대 4학기이며 3년제는 6학기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반대학은 4년제의 경우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의치학 계열(6년제)은 12학기, 건축학(5년제)은 10학기까지 지원하고 있다.

2) 국가장학금 II 유형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하여 최소한의 성적과 학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선발방식은 경제적 여건 및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지원기간은 I 유형과 동일하며, 지원 절차는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재단에서 소득분위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소득정보를 활용하여 대상학생을 선정 후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을 시행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의 100% 이상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노력을 하는 대학에게만 해당 대학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3) 등록금 인하 효과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신청은 전체 재학생 수 2,041,593명 가운데 1,546,251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이 75.7%이며 일반대는 1,182,549명으로 재학생 수의 76.9%, 전문대는 503,493명으로 재학생 수의 72.2%였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하는 335개 대학의 대학 자체노력계획

서 상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완화 규모는 등록금 인하로 4,126억 원, 장학금 확충으로 2,295억 원 등 총 6,422억 원이었으며 국가장학금 1조 7,500억 원과 합할 경우 2012년 소득 7분위 이하 전체 대학생 등록금 대비 25.2%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자체 노력에 의한 등록금 부담 완화가 6,110억 원, 장학금 확충으로 3,399억 원 등 총 9,500억 원으로 전체 대학생 등록금 14조 500억 원의 6.77%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학기 현재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은 I유형 53.9만 명, II유형 73.0만 명 등으로 I유형과 II유형 중복수혜자 439,495명을 제외하고 약 83.0만 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 I유형 450만 원, II유형 111.3만 원, 대학자체노력 46.6만 원 등 모두 608만 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으며 소득 1분위는 383만 원, 2분위 293만 원, 3분위 248만 원, 4-7분위 158만 원 등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통령과학장학생(65억 원),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796억 원), 저소득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드림장학생(4억 원)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865억 원 규모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2005년부터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게 까지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총 810억 원의 예산으로 2만 7,00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라. 학자금대출 제도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부터 대출방식이 학부모(학생) 보증 대출에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5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채권 발행한 재원으로 직접 대출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 제도)는 재학 중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로 2010년에 도입되었다. 대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이하 가정의 만 35세 이하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70/100(C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매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여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대출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매학기 결정하는데 2012년 1학기는 3.9%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로서 직전학기 70/100(C 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10년(까지) 거치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는 대출이자 전액 지원된다.

2012년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든든학자금 의무이용 확대와 군복무 기간 이차지원, 성적완화(B⁰→C⁰, 신입생 성적폐지), 이차율 인하 등으로 2011년 1학기 155,524명 대비 90,673명(58.3%)이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2012년 1학기 현재 117,096명에 4,428억 원이 지원되어 2011년 1학기에 비해 수혜인원과 대출금액이 모두 46.7%씩 감소하였다.

마.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안)

2013년 국가장학금은 I 유형 재원이 1조 5,500억 원으로 크게 확

대될 계획이다. 증액된 5,000억 원 이외에도 II유형의 규모를 2012년 보다 3,000억 원을 줄여 I 유형에 지원될 예정이다. 소득 4~7분위 대학생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지원하며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이 크게 증대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2012년의 1조원 보다 3,000억 원이 줄어든 7,000억 원으로 이중 6,000억 원은 2012년과 같이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나 1,000억 원은 자체노력 우수대학과 선취업후진학 선도대학 및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역 대학 등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 등에 지원된다.

2013년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인하 효과는 정부재정(2조 2,500억 원)과 대학 자체노력(6,000억 원)을 합해 2011년 대비 전체 학생 기준으로 최대 약 2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최대 34.7% 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3분위 이하 경우에는 최대 40.3%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신입생은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II유형 지원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대학은 학점·성적 요건이나 소득분위 제한 등을 일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에는 미달하지만 부모의 사업 실패 등과 같이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학생들은 II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III. 재정지원에 의한 35% 완화 방안

2017년 4조 3,400억 원을 목표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35% 완화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총부담액이 14조원으로 등록금 부담 35% 완화에는 약 4조 9,000억 원이 필요하나 소득에 맞추어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정규모는 4조 3,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등록금 14조원에서 기존 교외민간장학금 2조 원을 제외한 실질등록금 부담규모가 12조 원이므로 정부 지원규모 4조 3,400억 원은 실질등록금 규모의 36.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 2012년 현재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1조 9,000억 원으로 등록금의 13.5%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4조 3,400억 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매년 4,900억 원씩 순증이 필요해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다.

매년 4,900억 원 규모의 순증을 필요로 하는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과정을 통한 재원마련과 고등교육교부금 설치 및 운영 등의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예산 틀을 활용한 재원마련 방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권의 의지가 뒷받침이 된다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학생 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가계 대학생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학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득 2-4분위 가계의 대학생은 등록금의 75%, 5-7분위는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 8분위도 등록금의 25%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재원들은 소득 1-3분위 가계 대학생들과 4-7분위 가계 대학생들에 집중되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형 I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고, 유형 II 지원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이러한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8분위 이하 대학생들 중 성적우수 학생을 선별하여 전체 장학금 재원의 5~10%를 지급, 우수인재육성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향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유형 I 지원은 가계 소득 파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건강보험의 소득 파악과 자산조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형 II 지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학사정관제와 교수추천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II유형 장학금 배분과 관련한 정부의 장학금 배분 가이드라인은 성적보다는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II유형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은 대학자체 노력 인정금액 산정방식 가운데 교내 장학금 확충 인정 비율을 현재의 1/3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대학자체 노력에 의한 15% 완화방안

1. 분석결과의 요약

2010년 결산상 실질 학비 부담액(=등록금-장학금)을 이용하여 인하효과를 계산하였다. 실질학비 부담액(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합계임) 10조 4,716억 원은 2010년 등록금 수입액 13조 2,707억 원에서 교비회계 장학금과 산학협력단 장학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다.

분석결과, 등록금 부담 15% 완화는 소액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3.8%, 등록금 과다적립에 대한 제한을 통해 7.6%, 대학자체 노력을 통해 3.8%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총 15.2%의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등록금 부담 15% 완화안의 분석결과 요약표

구분		금액	완화율	적요
(1)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3,981억원	3.8%	2010년도 등록금 수입액 (132,707억원)의 3%추정
(2)등록금과다적립에 대한 제한	기타적립금 일정비율 사용	2,907억원	2.8%	2010년말 기타적립금의 10% 사용추정
	차기이월자금의 심의 강화	3,990억원	3.8%	2010년말 기타이월금의 30% 사용추정
	등록금회계 전출제한	1,081억원	1.0%	“건축적립금>건물감가상각누계액”인 대학들 대상
	소계	7,978억원	7.6%	
(3)대학 자체 노력	회계투명성 강화	2,654억원	2.5%	2010년도 등록금수입액의 2% 추정
	대학재정 효율화	1,327억원	1.3%	2010년도 등록금수입액의 1% 추정
	소계	3,981억원	3.8%	
합계		15,940억원	15.2%	

소액기부금 세액공제는 2010년도 등록금 수입액의 3%(3,981억 원)로 추정하였다(등록금 완화비율 3.8%). 등록금 과다적립에 대한 제한은 기타적립금을 매년 10%씩 2,907억 원(등록금 완화비율 2.8%)을 절감하고, 차기이월자금의 심의 강화를 통해 3,990억 원(등록금 완화비율 3.8%), 등록금회계 전출제한을 통해 1,081억 원(등록금 완화비율 1.0%)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자체 노력과 관련해서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등록금 수입액의 2%인 2,654억 원(등록금 완화비율 2.5%)과 대학재정 효율화를 통해 등록금수입액의 1%인 1,327억 원(등록금 완화비율 1.3%)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등록금 부담 15% 완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역

가. 개인소액기부금 세액공제

□ 등록금 부담완화 : 3,981억 원

○ 등록금 부담경감액 : 등록금수입액(132,707억 원)×3%=3,981억 원

대학에 대한 개인소액기부금에 대하여 1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액기부금 수입액은 학비감면(장학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수입액(13조 2,707억 원)의 3%인 3,981억 원(실질등록금 부담액 3.8% 경감)을 소액기부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기타적립금의 10% 등록금회계로 전출

□ 등록금 부담완화 : 2,907억 원

○ 등록금 부담경감액 : 기타적립금(29,068억 원)×10%=2,907억 원

2010년 말 현재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기타적립금(발전기금, 복지 기금, 석좌기금 등) 규모는 2조 9,068억 원으로 이를 매년 10%씩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실질등록금 부담액이 2.8%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다. 기타이월액의 30% 차기등록금 인하에 사용

□ 등록금 부담완화 : 3,990억 원

○ 등록금 부담경감액 : 기타이월금(13,300억 원)×30%=3,990억 원

2010년 말 현재 사립대학의 기타이월액은 1조 3,300억 원으로 사립대학 기타이월금의 30%만 사용하여도 3,990억 원의 등록금 부담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질등록금부담액의 3.8%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라. 등록금회계 전출제한

□ 등록금 부담완화 : 1,081억 원

○ 등록금 부담경감액 : 건축 관련 순지출액(10,806억 원)×10%=1,081억 원

2010년도 건축 관련 순지출액 1조 806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기금으로의 전입을 제한함으로써 실질등록금 부담액의 1.0%에 해당하는 1,081억 원의 인하효과가 있다.

마. 회계투명성 제고

□ 등록금 부담완화 : 2,654억 원

○ 등록금 부담경감액 : 등록금수입액(132,707억 원) × 2% = 2,654억 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과거 종합감사 결과에 의한 재정상 조치액(회수액)이 전체적으로 약 1,125억 원(총 380개교 × 2.96억 원)이며 2007년~2010년 사이 차기이월자금 평균 증가액이 1,621억 원 등 약 2,746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므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등

록금 수입액의 2%에 해당하는 2,654억 원(실질등록금 부담의 2.5%)을 절감할 수 있다.

바. 대학재정 효율화

□ 등록금 부담완화 : 1,327억원

○ 등록금 부담경감액 : 등록금수입액(132,707억 원) × 1% = 1,327억 원

2010년도 사립대학 결산자료에서 보수체계와 보수규정의 정비를 통해 교직원 보수 중 0.5%를 절감(73,170억 원×0.5%=366억 원)하고 관리운영비 및 자산 등 지출에서 약 1%를 절감(<21,630억 원+ 45,589억 원>×1% = 672억 원)하며 나머지 약 300억 원은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지원으로 절감하는 등 대학재정 효율화를 통해 등록금 수입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약하면 실질등록금부담액의 1.3%에 해당하는 1,327억 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3. 등록금부담 15% 완화 실제 실행방안

2011학년도 기준자료(단, 차기이월자금은 2010학년도 기준자료)를 이용하여 적립금 규모별로 등록금 인하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립금 상위대학은 <표 2>에서 처럼 등록금 부담 15% 절감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적립금 상위대학의 등록금 부담 15% 완화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억 원, %)

구분	A대		B대		C대	
	절감액	절감률	절감액	절감률	절감액	절감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62	3.8	56	3.8	33	3.8
기타적립금 일정비율 사용	55	3.4	0	0.0	170	19.3
차기이월자금의 심의 강화	0	0.0	35	2.5	105	11.9
등록금회계 전출제한 ^{주1)}	112	6.9	57	3.9	36	4.1
회계투명성 강화 및 대학재정 효율화 ^{주2)}	61	3.8	58	3.9	31	3.5
합계	290	17.8	206	14.1	375	42.6

총등록금	2,038	1,926	1,038
장학금	413	462	158
실질 등록금	1,625	1,464	880

구분	D대		E대		F대	
	절감액	절감률	절감액	절감률	절감액	절감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19	3.8	36	3.8	37	3.8
기타적립금 일정비율 사용	79	15.5	9	1.0	140	14.2
차기이월자금의 심의 강화	0	0.0	3	0.3	5	0.5
등록금회계 전출제한 ^{주1)}	14	2.8	51	5.5	58	5.9
회계투명성 강화 및 대학재정 효율화 ^{주2)}	18	3.6	34	3.6	38	3.8
합계	112	22.1	132	14.1	278	28.1

총등록금	602	1,135	1,254
장학금	95	200	268
실질 등록금	507	935	986

반면 적립금 하위대학은 적립금 상위대학과 달리 등록금 부담 15% 절감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다<표 3>.

<표 3> 적립금 하위대학의 등록금 부담 15% 완화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 억 원, %)

구분	가 대학교		나 대학교		다 대학교	
	절감액	절감률	절감액	절감률	절감액	절감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6	3.8	1	3.8	11	3.8
기타적립금 일정비율 사용	0	0.0	0	0.0	0	0.0
차기이월자금의 심의강화	10	6.5	0.1	0.5	8	2.8
등록금회계 전출제한	0	0.0	0	0.0	0	0.0
회계투명성 강화 및 대학재정 효율화 ^{주)}	5	3.5	1	4.6	11	3.8
합계	22	13.8	3	8.8	29	10.4

총등록금	182	44	353
장학금	24	15	72
실질 등록금	158	29	281

구분	라 대학교		마 대학교		바 대학교	
	절감액	절감률	절감액	절감률	절감액	절감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13	3.8	11	3.8	10	3.8
기타적립금 일정비율 사용	0	0.0	0	0.0	0	0.0
차기이월자금의 심의강화	31	9.0	1	0.2	1	0.4
등록금회계 전출제한	0	0.0	0	0.0	0	0.0
회계투명성 강화 및 대학재정 효율화 ^{주)}	12	3.6	12	4.1	10	3.8
합계	45	12.8	23	8.2	22	8.1

총등록금	414	389	349
장학금	66	107	77
실질 등록금	348	282	272

가 대학은 추가적으로 1.2%를 절감하여 등록금 부담 15% 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나 대학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율이 8.8%로 많지 않다. 다 대학, 라 대학과 마 대학, 바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총 10.4% 및 12.8%, 8.2%, 8.1% 만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등록금 부담 완화율이 15%를 넘는 대학은 15%만을 인하한 것으로 하고, 15% 미만인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만 인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대학의 등록금을 추정하였다<표 4>.

<표 4> 시뮬레이션 후 각 대학별 등록금 추정액

(단위: 천원, %)

구 분	학교명	평균등록금 (주1)	장학금 감면후 금액(주2)	자체 조정 인하 후 금액	인하율
적립금 상위대학	A 대학교	8,454	6,741	5,730	15.0
	B 대학교	8,183	6,220	5,345	14.1
	C 대학교	7,678	6,509	5,533	15.0
	D 대학교	7,400	6,232	5,297	15.0
	E 대학교	7,824	6,445	5,534	14.1
	F 대학교	7,848	6,171	5,245	15.0
적립금 하위대학	가 대학교	6,433	5,585	4,814	13.8
	나 대학교	6,034	3,977	3,625	8.8
	다 대학교	7,713	6,140	5,503	10.4
	라 대학교	6,313	5,307	4,626	12.8
	마 대학교	7,527	5,457	5,011	8.2
	바 대학교	7,105	5,537	5,090	8.1

주 : 1) 2012학년도 평균등록금임.

2) 각 학교별 2011학년도 등록금수입대비 장학금액 비율을 적용

적립금 하위대학 가운데 가 대학, 나 대학, 라 대학, 마 대학, 바 대학은 대학자체노력에 의한 등록금 부담 15% 완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적립금 상위대학의 실질등록금 수준보다 더 낮았다. 따라서 등록금 부담을 15% 미만으로 인하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다 대학은 인하 후 실질등록금 수준이 약 5.5백만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전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보수, 관리운영비 및 고정자산매입지출의 예산절감노력을 증대하여 절대적 등록금수준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결과 대학자체 노력으로 등록금 부담을 15%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등록금 부담 15% 완화방안이 모든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결과적으로 15% 감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적립금액이 적은 대학은 등록금 15% 완화를 위

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경우도 명목등록금 수준이 낮으므로 15% 완화보다 낮은 목표수준(예를 들어 10% 완화 등)으로 등록금 완화비율을 낮추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정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35% 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조달의 방법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대학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 15% 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적립금 규모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학별 등록금을 추정한 후 실제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2017년 4조 3,400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등록금 35% 부담 완화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총부담액 14조원의 35% 경감에는 4조 9,000억 원의 정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소득에 맞추어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정규모는 4조 3,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등록금 14조 502억 원에서 기존 교외민간장학금 2조 원을 제외하면 실질등록금 규모는 12조 502억 원이어서 정부 지원규모 4조 3,400억 원은 실질등록금 규모의 36.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2년 현재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2017년 4조 3,400억 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매년 4,900억 원씩 순증이 필요하며 순증재원마련 방법은 현재와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과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원대상 및 규모는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중산층의 대학생 자녀로 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 가계 대학생은 실질적인 대학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소득 2-4분위는 등록금의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 등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이러한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8분위 이하 대학생들 중 성적우수학생을 선별하여 전체 장학금 재원의 5~10%를 지급, 우수인재육성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향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 방식은 경상비 형태의 학교단위 지원은 지양하고, 현행 학생단위 지원인 국가장학금 유형 I과 장학금 지원에 연계된 학교단위 지원인 유형 II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재원들은 소득 1-3분위 가계 대학생들과 4-7분위 가계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지원에 집중되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형 I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고, 유형 II 지원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 15% 완화는 소액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3.8%, 등록금 과다적립에 대한 제한을 통해 7.6%, 회계투명성 강화 및 대학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 3.8%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총 15.2%의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등록금수입액(13조 2,707억 원)의 3%인 3,981억 원을 대학에 대한 개인기부액 10만원 한도의 소액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3.8%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타적립금 일정비율(10%) 사용을 통해 2.8%(2,907억 원), 차기이월자금의 심의 강화로 3.8%(3,990억 원), 등록금회계의 기금회

계로의 전출제한으로 1.0%(1,081억 원) 등 등록금 과다적립에 대한 제한을 통해 7,978억 원의 경감하여 7.6%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셋째,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2.5%(2,654억 원), 대학재정 효율화를 통해 1.3%(1,327억 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3.8%(3,981억 원) 완화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대학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 15%완화는 모든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결과적으로 15% 완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적립액이 많은 적립금 상위대학과 하위대학으로 구분하여 등록금 부담 15% 완화 달성 여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립금 상위대학의 경우는 등록금 부담액 15% 완화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으나 적립금 하위대학은 등록금 부담액을 15% 완화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금 부담 완화율이 15%를 넘는 대학은 15%만 인하하고 15% 미만인 대학은 해당 비율만큼만 인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학별 등록금을 추정한 결과 적립금 하위대학들은 다 대학을 제외하고 등록금 수준이 적립금 상위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 대학을 제외한 적립금 하위대학은 등록금을 15% 미만으로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각 대학이 등록금부담액을 15%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적립금 정도 등을 감안하여 15% 이내에서 완화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자체 노력에 의한 등록금 부담 15% 완화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수입재원의 다변화 및 구조조정 등 대학 경쟁력강화와 연계가 필요하다. 대학이 자체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금 부담 15%

완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학 재정 수입 다변화를 위해 기업으로부터의 R&D 과제 수탁 등 민간재원 확보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연구 성과를 기업에 이전하는 등의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체 R&D 수행, 재직자 교육, 대학 특허권의 기업 이전 등 기업과의 산학협력에 따른 수입인 산학협력수익 비중은 2010년 현재 21.0%에 불과한 실정이나 2010년 산학협력수익 비중이 전년대비 7.8%p 증가(6,523억 원)하는 등 최근 산학협력 관련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학협력단회계는 대부분 연구비로서 실제 재정운영에 대한 기여도는 낮은 편이나 간접비를 더욱 확대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면 대학재정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전체 차원의 구조조정 이외에 과도한 적립금의 제한 및 회계의 투명성 강화, 재정 효율성 제고 등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데, 구조조정 없이 이를 추진된다면 재정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부실 대학에 대해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학을 경유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은 대학의 구조조정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잘못으로 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는다거나 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지나친 등록금 부담 완화는 대학입학 수요를 증대시키는 등 고등교육에 대한 과중한 재정 부담의 초래는 물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학이 공급하는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의 양적, 질적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고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가 청년실업의 주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졸취업 확대 등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과의 정책적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높은 등록금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등록금 인하 압력에는 높은 등록금 수준에 비해 교육성과가 낮은 것도 한 원인이다. 등록금 수준에 부응하는 취업률 성과제고를 위해 대학 교육과정의 산업 적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가. (재)한국장학재단의 역할 확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사업의 시행으로 장학금 운영규모 및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단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와 대학과의 협력 미흡으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자료가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미비로 인해 고소득층에 잘못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대학이 직전학기 성적을 업로드해야 대상자 선발여부가 확정되는 등 장학금 지급 절차상의 미비도 보여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단지 정부의 장학금을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정책 목적에 일치하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곳에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

색하여야 하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운영관리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이 재정효율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나. 대학자체 노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1)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 도입

대학에 대한 개인기부금 가운데 10만 원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액기부금수입액은 학비감면(장학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과도한 적립금 제한 개선

첫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기타적립금(발전기금, 복지기금, 석좌기금 등) 가운데 기부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장학 적립금으로 계상하여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차기이월자금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를 제외한 기타이월액의 일정비율(예 : 30%)을 등록금 인하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건물 감가상각누계액(가치감소누적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건축기금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에서의 전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 건물매입지출은 건축기금에서 전출한 자금(펀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건축기금의 적립과 등록금 이용이라는 이중의 지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건축에 한해서는 차기이월자금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통

해 건축기금 적립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3) 회계투명성 제고

첫째, 현행 입학정원 1,000명(4년제) 이상인 대학 외부감사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대학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대학에 대한 외부감사범위의 확대는 대학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둘째,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부감사의 적정성을 감시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감리제도의 도입은 사립대학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독립적이고 적격성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대학 감사인선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외부감사 수행 시 감사인의 행위기준이 되는 것은 회계감사기준이며,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다. 대학회계감사기준은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의 기본원칙은 준수하되 대학회계와 대학재정 운영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감사기준이어야 한다.

다섯째, 명확한 예산편성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집행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대학의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여섯째, 현재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등록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금 수입의 원천과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등록금회계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곱째, 표준화된 하나의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결산명세서 등 대학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대학 재무정보의 공시 신뢰성 부여하여야 한다. 또 공시 내용이 고의로 왜곡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학 공시의 신뢰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대학은 내부공시 담당책임관을 지정하여 신뢰성 있는 대학공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덟째, 대학의 재정 투명성 지수 발표와 대학교직원의 윤리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대학의 재정 투명성 지수 발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투명성 순위를 발표하는 방법과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부 대학을 시상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재정·회계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 서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강조와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4) 대학재정 효율화

첫째, 산학협력단 활동경비(인건비, 건물사용료 등)를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회계와 교비회계의

자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교비회계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공간 활용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시설자금을 등록금 재원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공간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로 인해 등록금에 부담을 주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익용기본재산의 대체취득에 따른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고 추후 해산 시 국고로 귀속되는 자산이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소득은 무조건 교비로 전출하여야 한다.

넷째, 잉여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수익창출에 활용하도록 교지확보율을 완화하여야 한다. 교육용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재원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완화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직원에 대한 관련 보수규정을 대학정보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보수체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하고 편법적인 보수인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장학금 이중수혜금지를 통해 수혜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많은 대학들이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그린캠퍼스 개선사업(전기/수도 공공요금 절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전기와 수돗물을 절약하면 상당한 수준의

전기와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대학 캠퍼스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빗물재활용사업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비를 절약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